



§ 통합투자세액공제 (기존 10개 투자세액공제를 통합)

제도개요

-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

적용대상 · 공제액

- (대상) 소비성서비스업,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외 법인(과세특례 적용 조합법인 제외) 사업자
 -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(토지, 차량 등 조특칙 별표1 제외), 특정 시설 · 업종 관련 유 · 무형자산에 투자
- (공제액) {당해연도 투자액 × 공제율} + {(당해연도 투자액 - 직전3년 평균 투자액) × 3%(국가전략 4%)}

구 분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
일반	10%	5%	1%
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	12%	6%	3%
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('21.7.1.~'24.12.31)	16%	8%	8%

* {(당해연도 투자액 - 직전3년 평균 투자액) × 3%(국가전략 4%)} 은 {당해연도 투자액 × 공제율} 의 2배 한도 적용

사후관리

-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내(특정 시설 · 업종 유 · 무형자산 중 건축물 등 5년)에 해당 자산을 처분 · 임대한 경우
-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 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
 - ▶ 사유발생시 세액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(日 0.025%, 2022.2.15. 이후 0.022%)을 가산하여 납부



§ 임시투자세액공제 ('23년만 한시적 공제율 더 크게 적용)

제도개요

- 투자촉진을 위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공제율(최고 13%p 더)을 상향하여 투자세액공제 적용

적용대상 · 공제액

- 2023년 투자한 금액 (2022년 이전 투자분, 2024년 이후 투자분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제외)
– 대상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사업용 자산
- 총 공제세액 = (2023년 투자액 × 당기분 공제율) + (3년평균대비 투자 증가분 × 증가분 공제율)

구 분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3년 평균대비 증가분
일 반	12%(+2p)	7%(+2p)	3%(+2p)	10%(+7p)
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	18%(+6p)	10%(+4p)	6%(+3p)	10%(+7p)
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('24.12.31.까지)	25%	15%	15%	10%(+6p)

공제율 예시

- 중소기업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'23년에 투자시 투자액의 최고 35% 투자세액공제율 적용
- 중소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'23년에 투자시 투자액의 최고 28% 투자세액공제율 적용
-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'23년에 투자시 투자액의 최고 22% 투자세액공제율 적용



§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계산사례(3-1)

사례1

- 대기업 A사가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매년 1,000억원을 투자하면서,
 - 2023년에 5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
 - 2024년에 5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의 통합투자세액공제액 적용

구 분 (단위 : 억원)	2023년 투자분 공제액			2024년 투자 분 공제액			2년간 공제액
	기본공제	추가공제	소계	기본공제	추가공제	소계	
23년 추가투자 시	90 1,500X6%	50 500X10%	140	30 1,000X3%	-	30	170 (50 ↑)
24년 추가투자 시	60 1,000X6%	-	60	45 1,500X3%	15 500X3%	60	120

➡ 23년에 500억원을 추가 투자하는 경우, 23-24년 2년동안 총 170억원의 세액공제 적용
 24년에 5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보다 총 50억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



§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계산사례(3-2)

사례2

- 중소기업 B사가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매년 100억원을 투자하면서,
 - 2023년에 1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
 - 2024년에 1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의 통합투자세액공제액 적용

구 분 (단위 : 억원)	2023년 투자분 공제액			2024년 투자 분 공제액			2년간 공제액
	기본공제	추가공제	소계	기본공제	추가공제	소계	
23년 추가투자 시	36 200X18%	10 100X10%	46	12 100X12%	-	12	58 (13↑)
24년 추가투자 시	18 100X18%	-	18	24 200X12%	3 100X3%	27	45

➡ 23년에 100억원을 추가 투자하는 경우, 23-24년 2년동안 총 58억원의 세액공제 적용
 24년에 1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보다 총 13억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



§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계산사례(3-3)

사례3

- 중소기업 C사가 일반 사업용자산에 매년 100억원을 투자하면서,
 - 2023년에 1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
 - 2024년에 1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의 통합투자세액공제액 적용

구 분 (단위 : 억원)	2023년 투자분 공제액			2024년 투자 분 공제액			2년간 공제액
	기본공제	추가공제	소계	기본공제	추가공제	소계	
23년 추가투자 시	24 200X12%	10 100X10%	34	10 100X10%	-	10	44(9 ↑)
24년 추가투자 시	12 100X12%	-	12	20 200X10%	3 100X3%	23	3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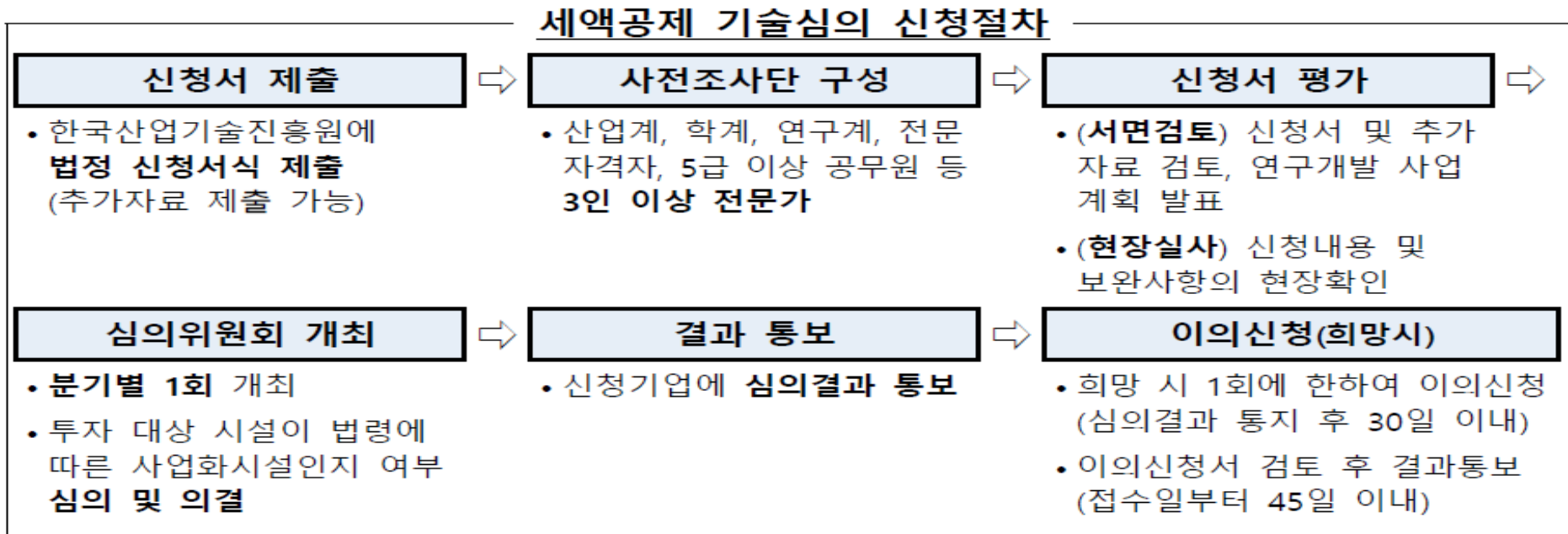
➡ 23년에 100억원을 추가 투자하는 경우, 23-24년 2년동안 총 44억원의 세액공제 적용
 24년에 1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보다 총 9억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

§ 사전 세액공제 신청, 후 기술 인정 (조특령§21⑬, 조특칙§13)



제도개요

- 투자시설이 법령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해당하는지를 “연구개발세액공제심의위원회” 심의를 통해 결정



- 23년부터 고율의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 뒤, 후 시설인정 가능
 - 세액공제 후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시설인정 신청 (상시 접수 중)
 -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(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제외)에 걸친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시설 인정 신청

§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인정 신청



기술인정 신청 시 필수제출서류 (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고_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)

서식명	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투자	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투자
1. 인정 신청서	○	○
2. 사업화시설투자 사업보고서	○	○
3. 시설투자 명세서	○	○

■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[별지 제2호 서식] <개정 2022.8.12.> 신성장·원천기술(사업화시설투자) 인정 신청서 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<table border="1"> <tr> <td rowspan="4">신청인</td> <td>상호 (법인명)</td> <td></td> <td>사업자 등록번호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대표자 성명</td> <td></td> <td>①업종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②기업 유형 []대기업 []중견기업 []중소기업</td> <td></td> <td>코스닥 상장여부</td> <td>[]여 []</td> </tr> <tr> <td>③사업장 주소 ()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담당자</td> <td>부서</td> <td></td> <td>성명 (직위)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전화번호 (휴대전화)</td> <td></td> <td>전자우편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5">④신청 대상</td> <td>⑥과세연도 (조특제법 제8의8 (‘17~’19), 별표(‘20~))</td> <td>⑦장소(소재지)</td> <td>⑧투자자산수</td> <td>⑨투자금액(원)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					신청인	상호 (법인명)		사업자 등록번호		대표자 성명		①업종		②기업 유형 []대기업 []중견기업 []중소기업		코스닥 상장여부	[]여 []	③사업장 주소 ()				담당자	부서		성명 (직위)		전화번호 (휴대전화)		전자우편		④신청 대상	⑥과세연도 (조특제법 제8의8 (‘17~’19), 별표(‘20~))	⑦장소(소재지)	⑧투자자산수	⑨투자금액(원)																	■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[별지 제7호 서식] <개정 2020.8.12.> 사업화시설투자 사업보고서 ※ 기술구분별, 대상기술별 사업화시설투자 사업보고서 각각 작성 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<table border="1"> <tr> <td>기술구분</td> <td>[] 신성장원천기술</td> <td>[] 국가전략기술</td> </tr> <tr> <td>대상기술</td> <td colspan="2">예시) 1-가-1), 2-가-1) 등 모두 작성</td> </tr> </table>						기술구분	[] 신성장원천기술	[] 국가전략기술	대상기술	예시) 1-가-1), 2-가-1) 등 모두 작성		■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[별지 제8호 서식] <개정 2022.8.12.> 시설투자 명세서 ※ 기술구분별 시설투자 명세서 각각 작성 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<table border="1"> <tr> <td>기술구분</td> <td>[] 신성장원천기술</td> <td>[] 국가전략기술</td> </tr> <tr> <td>대상기술</td> <td colspan="2">예시) 1-가-1), 2-가-1) 등 모두 작성</td> </tr> </table> (단위 : 원)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순번</th> <th rowspan="2">과세연도</th> <th rowspan="2">대상기술</th> <th rowspan="2">장소(소재지)</th> <th rowspan="2">자산번호</th> <th rowspan="2">상세내역</th> <th rowspan="2">취득일자</th> <th colspan="2">구입처</th> <th rowspan="2">투자금액</th> </tr> <tr> <th>상호 또는 법인명</th> <th>사업자 등록번호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/tr> <tr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/tr> <tr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/tr> <tr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/tr> <tr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/tr> </tbody> </table>						기술구분	[] 신성장원천기술	[] 국가전략기술	대상기술	예시) 1-가-1), 2-가-1) 등 모두 작성		순번	과세연도	대상기술	장소(소재지)	자산번호	상세내역	취득일자	구입처		투자금액	상호 또는 법인명	사업자 등록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청인	상호 (법인명)		사업자 등록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대표자 성명		①업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②기업 유형 []대기업 []중견기업 []중소기업		코스닥 상장여부	[]여 [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③사업장 주소 (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담당자	부서		성명 (직위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전화번호 (휴대전화)		전자우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④신청 대상	⑥과세연도 (조특제법 제8의8 (‘17~’19), 별표(‘20~))	⑦장소(소재지)	⑧투자자산수	⑨투자금액(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술구분	[] 신성장원천기술	[] 국가전략기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상기술	예시) 1-가-1), 2-가-1) 등 모두 작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술구분	[] 신성장원천기술	[] 국가전략기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상기술	예시) 1-가-1), 2-가-1) 등 모두 작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순번	과세연도	대상기술	장소(소재지)	자산번호	상세내역	취득일자	구입처		투자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		상호 또는 법인명	사업자 등록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